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318
----------	-------

발의연월일 : 2026. 4. 14.

발 의 자 : 엄태영 · 박덕흠 · 김재섭  
김상훈 · 박성민 · 박충권  
이양수 · 김은혜 · 강명구  
복기왕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친환경농수산물·무농약원료가공 식품 또는 유기식품(이하 “친환경농수산물등”이라 한다)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은 학교·공공기관·군부대 등에 대하여 유기식품등 인증기관의 인증품을 우선구매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음.

그런데 학교급식 등 단체급식은 국민의 일상적인 식생활과 직결되는 영역으로서 안전한 먹거리 공급과 친환경농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정책적 수단이 되므로, 친환경농수산물등의 안정적인 공급과 이를 통한 소비확대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충분히 뒷받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학교·공공기관·군부대 등이 학교급식 등 단체급식을 실시하는 경우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를 친환경농수

산물등으로 사용하도록 구매의무 규정을 신설하여 친환경농어업의 육성  
성과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5조의2 신설).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의2(친환경농수산물등 구매의무)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제 5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는 학교급식 등 단체급식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를 친환경농수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유기식품(이하 이 조에서 “친환경농수산물등”이라 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구매하고자 하는 식재료의 품목에 친환경농수산물등이 없는 경우
2. 친환경농수산물등의 안정적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3. 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친환경농수산물등의 구매가 어렵다고 해당 기관 및 단체의 장이 판단하는 경우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친환경농수산물등 구매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식재료를 구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lt;신 설&gt;</p>	<p>제55조의2(친환경농수산물등 구매의무)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제5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는 학교급식 등 단체급식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를 친환경농수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유기식품(이하 이 조에서 “친환경농수산물등”이라 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구매하고자 하는 식재료의 품목에 친환경농수산물등이 없는 경우</li> <li>2. 친환경농수산물등의 안정적인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li> <li>3. 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친환경농수산물등의 구매가 어렵다고 해당 기관 및 단체의 장이 판</li> </ol>

단하는 경우